

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1. 개정 이유

예술 활동 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폐지하고,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,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(안 제2조의2제1항·제2항·제3항)
- 나. 신진예술인 등 별도 지원을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(안 제2조의4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- 2) 입법예고 예정

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중 “이상 100명 이하”를 “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”를 “제4항까지”로 한다.

③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4(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완화 및 유효기간 변경)
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에 대해 별도의 예규로 이 조건을 완화 및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<u>이상 100명 이하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<u>한다</u> . 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 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<u>이상</u>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하고, 연임할 수 있다</u> . ③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<u>한다</u> .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----- <u>제4항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제2조의4(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완화 및 유효기간 변경)</u> <u>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에 대해 별도의 예규로 이 조건을 완화 및 변경할 수 있다.</u>